

# 포항가속기연구소 보수규정

제정 2003. 3. 1    개정 2013. 3. 1  
개정 2008. 9.16    개정 2015.12.23  
개정 2009. 3. 1    개정 2016. 6.16  
개정 2010. 3. 1    개정 2016.11.28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 소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원, 기술원, 행정원(이하 “소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(개정: 2015.12.23)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보수”라 함은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2. “기본연봉”이라 함은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연봉액을 말한다.
3. “제수당”이라 함은 법정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. (개정: 2008.9.16)
4. “월봉액”이라 함은 개인별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5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. (개정: 2016.6.16.)
6. “일할계산”이라 함은 월봉액과 제수당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7. “근무일수”라 함은 발령일을 포함하여 재직한 일수이며, 중간의 휴무일을 포함한다.

제4조(보수의 체계) 소원의 보수체계는 기본연봉(급량비 포함)과 제수당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계산기간) 월봉액 및 근태계산 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단수처리) 월봉액을 계산할 때 원미만 단수는 버린다.

제7조(계산기준) ① 월봉액 계산은 임용, 전보 및 복직발령일로부터 기산하고 휴업, 휴직, 정직발령전일 및 면직발령일로 마감한다. 다만, 파면 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소원에 대하여는 당월분 월봉액의 전액을 지급한다.

② 감봉처분을 받은 소원에 대하여는 발령된 달의 월봉액 계산 기산일로부터 감봉기간까지 감액한다.

③ 월봉액은 지급월 15일 현재의 직급 및 기본연봉으로 계산, 지급한다.

④ 면직,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

근무한 때에는 그 기간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월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정직 또는 파면 발령일이 당월 보수 지급이후에 시행된 때에는 기 지급된 보수 지급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.

⑥ 이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당월분 월봉액을 지급한다.

⑦ 퇴직한 자에게는 월봉액 지급 이후에 급여 인상으로 소급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분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.

⑧ 일할계산시 일당기준금액은 월봉액을 해당월의 총일수 나눈 것으로 한다.

제8조(결근시 월봉액) ① 당월 지급기간내에 유계결근 총일수가 7일 이내인 때에는 당월분 월봉액의 전액을 지급하고, 8일 이상인 때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.

② 무계결근에 대하여는 결근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월봉액을 감액 지급한다.

제9조(휴직 및 징계중의 보수) ① 휴직한 소원의 휴직 기간중 보수는 법인 정관의 휴직 교원 처우에 준한다.

② 징계중인 소원의 보수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월봉액의 2/3를 감한다.

2.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 총액은 월봉액의 10%를 감한다.

제10조(지급일) 월봉액은 매월 17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11조(휴업급여)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소원에게 휴업을 명한 때의 휴업급여 지급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.

제12조(위촉 및 임시직 소원의 급여) 위촉 및 임시직 소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.

## 제 2 장 기본연봉 및 평가

제13조(기본연봉의 인상율 적용원칙) ① 인상율 적용은 전체인상율 범위 내에서 기본인상율과 차등인상율로 구분 적용한다.

② 전체인상율은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③ 기본인상율은 근무평가에 관계없이 전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상율을 말하며, 매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.

④ 차등인상율은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며, 평균차등인상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등급에 따른 일정비율을 개인별 차등인상율로 한다.

⑤ 개인별 차등인상율은 차등인상율 재원 범위내에서 평가등급별 인원을 감안하여 정한다.

⑥ 매년 기본인상율 및 차등인상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기본연봉은 전년도의

기본인상율과 평균차등인상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기본연봉으로 한다.

제14조(근무평가절차) ① 연구원 및 기술원의 근무평가는 연구소의 연구원 및 기술원 근무평가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. (개정: 2015.12.23)

② 행정원의 근무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. (신설: 2015.12.23)

제15조(기본연봉 하한) 직종별,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은 매년 기본인상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.

### 제 3 장 제 수 당

제16조(가족수당) (삭제: 2008.9.16)

제17조(야간근무수당) 소원이 22:00부터 다음날 06:00 사이에 근무한 때에는 법정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한다.(개정: 2016.6.16.)

제18조(시간외 근무수당) 소원이 1일(日)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.(개정: 2016.6.16.)

제19조(휴일근무수당) 소원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.(개정: 2016.6.16.)

제20조(시간외 및 휴일근무) 시간외 및 휴일근무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. (개정: 2016.11.28.)

1.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(부서장)의 승인을 얻어 법정 시간외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: 2016.6.16.)
2.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근무
  - 나. 국가가 요하는 비상근무 및 이와 유사한 소집으로 인한 근무
  - 다. 당직 및 대기발령기간
3. 기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 ‘시간외 근무 운영기준’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.

제21조(자녀학비 보조수당) 소원에게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. 단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22조(개인연금보조비) (삭제: 2013.3.1)

제23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소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에 준한다.

1.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환되는 기본연봉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말일까지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  1. 본봉
  2. 직무급
  3. 급량비
  4. 조정수당
  5. 보전수당
  6. 기말수당
  7. 정근수당
  8. 체력단련비
  9. 효도휴가비
  10. 연가비
  11. 하계휴가비
  12. 연구수당
  13. 기술수당
- ② 2003년 9월 승진자에 대한 기본연봉 책정은 2003. 3. 1에서 2003. 8. 31까지의 현 기본연봉에 2003. 9. 1부터 2004. 2. 28까지의 승진시 기본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자격면허수당은 2003년 3월 1일부터 2년 유예 지급 후 완전 폐지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2. (가족수당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2008년 9월 15일 기준 가족수당 지급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.
3. (차량유지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시행과 동시에 ‘자가운전자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급지침’은 폐지하며, 차량유지비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.
  - ① 2008년 9월 15일 현재 차량유지비 지급액은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 해당직급별 기본급 하한선에 가산한다. 단, 이 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과장급 대우로 신규 임용되는 직원에게는 차량유지비 해당금액 (1,200,000원)을 기본급에 가산한다.
  - ② 이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2008년 9월 15일 기준 지급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3급(수석급 대우) 및 5급(책임급 대우) 승진시 기본연봉은 아래 각 목의 해당금액을 승진 전의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책정한다.
  - 가. 3급(수석급 대우) : 1,859,000원
  - 나. 5급(책임급 대우) : 2,511,000원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08년 9월 16일부 및 2009년 3월 1일부 시행한 부칙에도 불구하고 3급(수석급대우), 5급(책임급대우) 승진 시에는 직급 하한선을 적용한다. 단,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직급 하한선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22조(개인연금보조비)의 삭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행정원의 업적급 지급은 2016년 3월 1일부로 적용한다. 다만 2015년도 업적급은 2015년도 사업비로, 2016년 1월, 2월 업적급은 2016년도 사업비로 개인별 일괄 지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행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대학직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